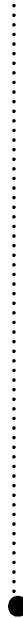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제293회 정례회(2017. 6. 12 ~ 6. 2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선열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
기에 가능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높이 받들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제10대 후반기 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들의 거칠어진 손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또한 민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포함니다. 아울러 지난 4월과 5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권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조현일·이흥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탈 원전 정책 등 변화된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북의 미래전략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종의 지혜를 다함께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도가 중점 추진해 온 도로·철도망 등 SOC 구축사업과 새마을 세계화 사업,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2017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등 주요 도정이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는 양쪽 수레바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와 다시 확산되는 AI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곧 다가올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과 백두대간 등 지역의 관광명소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콘텐츠를 한층 더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
입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이니만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개최되는 우리 도
의회와 전남도의회 간 상생발전 화합대회는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 두 지역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은 마무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3백만 도민들이 아픔과 절망으로부터 치유와 희망을 얘기

하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DNA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3백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 응 규

차 례

I. 개	황		11
II. 의사일정			13
III. 의안처리			20
IV. 민원처리			21
V. 본회의 보고사항			23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7
☐ 장경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7
☐ 김인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39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51
☐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63
VII. 5분 자유발언			75
☐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75
☐ 박현국 의원(기획경제위원회)			79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83

부 록

☐ 조	례	안(18건)		89
☐ 승	인	안(2건)		185
☐ 동	의	안(1건)		193
☐ 규	칙	안(1건)		199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93회 정례회는 2017년 6월 12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2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9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2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12일(월) 14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등 안건을 처리하고 두 의원의 도정질문을 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화) 14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폭넓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월) 11시에 개의하여 3명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원님들의 도정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하여 두 지역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음 회기는 제294회 임시회로 2017년 8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17년 6월 12일(월) 14: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7년 6월 12일 ~ 6월 26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68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1	1	1	2	1	1	1	2	2	-
누 계	354	29	44	46	38	34	36	38	56	33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2(월) 14:00 (제1차)	☐ 안전처리 ○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장경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인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6. 13(화) 14:00 (제2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6. 26(월) 11:00 (제3차)	☐ 5분 자유발언 -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박현국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26(월) 11:00 (제3차)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3(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제294회 임시회 회기협회의 건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5(목) 10:00 (제1차)	☐ 안건처리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투자유치실 소관) ○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조경제산업실,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 민생본부, 대변인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월) 11:10 (제1차)	☐ 안건처리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20(화) 14:10 (제2차)	☐ 안건처리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월) 10:30 (제1차)	☐ 안건처리 ○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입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월) 10:30 (제1차)	○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정책관, 농업기술원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민안전실 소관)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소관)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2(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9(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21(수) 10:40 (제1차)	☐ 안건처리 ○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자치행정국 소관 나.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마. 의회사무처 소관	
6. 22(목) 10:40 (제2차)	☐ 안건처리 ○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정책관·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Ⅲ. 의안처리

제10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부의)	처리 (가+나+다)	의결					철회 (나)	보류 (다)	비고
				계 (가)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27 (645)	27 (645)	26 (628)	24 (556)	2 (69)	0 (3)		0 (9)	1 (8)	
조 례 안	소 계	19 (405)	19 (405)	18 (389)	17 (342)	1 (44)	0 (3)		0 (9)	1 (7)	
	의 회 제 안	11 (226)	11 (226)	10 (213)	10 (189)	0 (24)			0 (6)	1 (7)	
	도지사 제 출	5 (122)	5 (122)	5 (121)	4 (107)	1 (14)			0 (1)		
	교육감 제 출	3 (57)	3 (57)	3 (55)	3 (46)	0 (6)	0 (3)		0 (2)		
규 칙 안		1 (5)	1 (5)	1 (5)	1 (5)						
예산·결산		0 (29)	0 (29)	0 (29)	0 (15)	0 (14)					
동의·승인		3 (52)	3 (52)	3 (51)	2 (40)	1 (11)				0 (1)	
건 의 안		0 (2)	0 (2)	0 (2)	0 (2)						
결 의 안		0 (25)	0 (25)	0 (25)	0 (25)						
기 타 안		4 (127)	4 (127)	4 (127)	4 (127)						

※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81)	1 (36)	1 (9)	(2)	(17)	1 (5)	(6)	(4)		(2)
의 회 운 영	(2)	(2)								
기 경 화 제	(7)	(3)					(4)			
행 정 보 건 보 지	1 (13)	1 (7)	(4)		(1)		(1)			
문 화 회 환	1 (12)	(5)	1 (5)					(2)		
농 수 산	(3)	(2)					(1)			
건 설 소 방	(32)	(11)		(2)	(16)			(2)		(1)
교 육	1 (11)	(5)				1 (5)				(1)
특 별 위 원 회	(1)	(1)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79)	2 (78)	(1)			
의회운영	(2)	(2)				
기획경제	(7)	(7)				
행 정 보건복지	1 (13)	1 (13)				
문화환경	(11)	(11)				1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32)	(31)	(1)			
교 육	1 (10)	1 (10)				1
특별위원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22건(조례안 19, 승인안 2, 동의안 1)

2. 처리안건 : 23건

- 가결 의안 : 22건(조례안 18, 승인안 2, 규칙안 1, 동의안 1)
- 보류 의안 : 1건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안접수 내용

연번	제출(발의)자 (접수일)	안건명	비고
1	윤성규 의원 외 13명 (2017. 6. 1)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조례안
2	김창규 의원 외 9명 (2017. 6. 1)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3	도지사 (2017. 6. 1)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4	도지사 (2017. 6. 1)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5	이상구 의원 외 10명 (2017. 6. 2)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6	도지사 (2017. 6.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7	도지사 (2017. 6. 1)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8	도지사 (2017. 6. 1)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안
9	최병준 의원 외 14명 (2017. 6. 1)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안	조례안
10	황이주 의원 외 10명 (2017. 6. 1)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

연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비 고
11	한창화 의원 외 17명 (2017. 6. 1)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2	남진복 의원 외 12명 (2017. 6. 1)	경상북도 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13	박용선 의원 외 12명 (2017. 6. 1)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14	장용훈 의원 외 10명 (2017. 6. 1)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5	박용선 의원 외 16명 (2017. 6. 1)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16	교육감 (2017. 6.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7	교육감 (2017. 6.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18	교육감 (2017. 6. 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9	도지사 (2017. 5. 3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승인안
20	교육감 (2017. 5. 3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승인안
21	도지사 (2017. 6. 1)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22	남진복 의원 외 31명 (2017. 5. 1)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안

4. 조례 공포 사항 : 19건

연번	이송일	이송처	안 건 명	공포일
1	2017. 6. 27	사무처장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7. 7. 3 (제70호)
2		도지사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2017. 7. 13 (제3947호)
3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7. 13 (제3948호)
4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17. 7. 13 (제3949호)
5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7. 13 (제3950호)
6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7. 7. 13 (제3951호)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7. 13 (제3952호)
8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7. 13 (제3953호)
9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	2017. 7. 13 (제3954호)
10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2017. 7. 13 (제3955호)
11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2017. 7. 13 (제3956호)
12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7. 7. 13 (제3957호)
13			경상북도 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	2017. 7. 13 (제3958호)
14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7. 7. 13 (제3959호)
15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7. 13 (제3960호)
16	2017. 6. 12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7. 7. 10 (제3945호)
1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7. 10 (제3946호)
18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2017. 6. 19 (제3943호)
1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19 (제3944호)

5.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위원회	일 자	장 소	참석의원	활 동 내 용
운영위원회	2017. 5. 30 ~ 2017. 5. 31	강원도 평창	위원장 외 7명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간 교류 협력 및 방안모색 등
행정보건복지	2017. 5. 22 ~ 2017. 5. 23	강원도 일원	위원장 외 8명	현지확인 -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경기장 선진 우수사례 시찰
농수산	2017. 6. 5	봉화	위원장 외 6명	- AI 및 가뭄예방대책 등 당면 농정현안사항 토의 - 우박피해 현지방문
건설소방	2017. 5. 29 ~ 2017. 5. 31	제주도 일원	위원장 외 9명	연찬회 - 전문지식함양 및 주요시책 토론 - 첨단산업단지 및 4차산업기업 벤치마킹, 공항관련 자료 수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5. 31 ~ 2017. 6. 2	제주도 일원	위원장 외 11명	예결특위 운영성과 및 결산심사 방향 토론
자연공원 정책 연구회	2017. 6. 5	구미	홍진규 대표 외 10명	세미나 및 현장방문 - 주제발표 및 토론 - 금오산 도립공원의 개관 및 발전 방향 - 현장방문 : 금오산도립공원 및 관리사무소
산림정책 연구회	2017. 6. 8 ~ 2017. 6. 9	포항 부산	곽경호 대표 외 7명	세미나 및 현장방문 - 주제발표 및 토론 - 지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 현장방문 : 포항시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 니드하우스(부산)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2017년 6월 12일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장경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대선을 거쳤고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국론은 사분오열되었고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우리 도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민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갈등과 반목을 접고 다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보복 정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폐 청산의 초점이 과거의 잘못된 시스템과 불합리를 개선하자는 데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부조리를 철폐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3백만 도민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경북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경 경북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지역의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온다 할 만큼 지역인재 육성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 우위는 달라지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매년 2만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 이 중 3,000여 명의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내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경북도에서는 경북학숙을 운영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면학상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등록금과 수도권 지역의 높은 전·월세 값, 폭등한 물가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실정에서 본 의원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재경 경북학숙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표〉 시·도별 재경학숙 현황

구분	시·도	학숙명칭	설립연도	건립비용	수용인원	월비용
재경 학숙	경기	경기도장학관	1990	55억원	336명	13만원
	강원	강원학사	1975	30억원	246명	15만원
	충북	충북미래관	1992	396억원	270명	20만원
	전북	서울장학숙	1992	35억원	308명	15만원
	전남·광주	남도학숙	1994	278억원	850명	15만원
	제주	탐라영재관	2001	190억원	300명	15만원
건립 중	충북	제2학사	2017 예정	470억원	300명	-
	제주	제2학사	2017 예정	15억원	15명	-
	경남	(가칭)남명학사	2018 예정	347억원	400명	-
	전남·광주	제2학사	2018 예정	498억원	604명	-

표에서 보듯 현재 경기, 전남·광주, 전북, 충북, 강원, 제주에서는 서울지역에 3, 4백명 규모의 재경 학숙을 이미 운영 중이며, 경남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400명 규모의 재경 학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운영 중인 850명 규모의 재경 학숙에 대해 600명 규모의 제2학숙을, 충북은 300명 규모의 제2학숙을 건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75년부터 이렇게 기이 설립된 타 시·도의 재경 학숙들은 양질의 면학 환경 제공과 더불어 월세, 하숙보다 4, 5배 저렴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킴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향토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인재의 고장,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는 경북도가 타 시·도의 인재육성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인 행태를 보면서 본 의원과 도민들은 크나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우리 도 출신의 수도권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2015년 2,600여 명에서 2017년 3,000여 명으로 도내 대학진학 학생의 10에서 13%가 수도권의 우수한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고 타 시·도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주·전남과 충북, 제주의 경우 기존 설치된 재경 학숙에 대해서 제2학숙을 건립 중에 있는 상황 등 타 지자체의 이러한 인재육성정책 의지는 우리 도민들에게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이러한 장기적 투자들이 지역발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재경 경북학숙 설치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북의 인재를 육성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에서는 지난 '93년 경상북도 경북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지역 학숙 건립의 법적 근거는 명시하였으나 지난 2011년 재경 경북학숙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부정적 결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 “경상북도 경북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위치) ① 학숙은 경북지역과 서울지역에 건립하되, 수혜학생수와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대학밀집지역에 건립한다.
② 경북지역에 우선 건립한다.

그러나 타 시·도의 예를 보듯 당장 건립비용이나 운영비는 부담이지만 지역 인적 네트워크 결성이나 우수 학생에 대한 미래투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장기적인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재경 경북학숙 건립의 재원이 문제라면 본 의원은 재경 경북학숙 건립 재원을 경북개발공사의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막대한 이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남도의 경우 재정 학숙 건립에 도비 지원 한 푼 없이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경영혁신을 통한 이익배당금 347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 강남에 ‘(가칭)남명학사’를 건립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정 경북학숙 건립 이후 재정 경북향우회, 경상북도 서울지사, 투자유치사무소 등을 유치시켜 재정 경북 네트워크 형성과 수도권외의 ‘경북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도기관 포항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는 3백만 도민의 여망을 담은 신도청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었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신도청시대는 경북의 정체성, 자존감 확립과 더불어 경북을 재설계하고 국토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만큼 도민 모두는 신도청시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으로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120만 동남권 주민들의 행정공백에 따른 불편과 소외감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동해안발전본부를 동남권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동남권 4개 시·군에 공모와 평가를 거쳐 지난 2016년 포항 이전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당초 2018년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동해안발전본부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19년 8월로 이전을 연기함으로써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의 철강과 원자력, 해양·산악사고 등 대형 재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이전 역시 지난 2014년 동해안 8개 시·군의 공모와 평가를 거쳐 포항으로 이전이 결정된 바 있으나 이 또한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당초 2017년까지 이전 완료 예정이던 것을 2019년까지 2년을 연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관 이전의 연기는 경북도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120만 동남권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해안발전본부는 경북의 미래인 신동해안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환동해 북방경제 이니셔티브 전초기지로 경북도 해양진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또한 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각종 인허가 등 관련업무 처리에 동해안

동남권 지역 주민들은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동해안으로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도청이 경북 북부권으로 이전한 지 1년이 넘는 지금 동해안발전본부가 대구 산격동의 구청사에 홀로 상주해 있다는 것 또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한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포항시장과의 면담에서 동해안발전본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포항 내 임시청사 제공 약속을 받은 바 있고 포항시에서도 임시청사 제공에 대한 뜻을 경북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해안발전본부가 청사건립 이전이라도 연내에 포항의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동남권 도민을 위한 적극적이며 신뢰 받는 행정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설립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지사의 공약인 만큼 현 도지사께서 남은 임기 내에 하루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국 최대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동해안 지역의 원전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되는 만큼 하루라도 빠른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한 대비에 내일은 없고 연기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도민들과 2017년 설립을 약속한 만큼 동해안119특수구조단의 연내 설립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토요 방과 후 수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2년 3월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지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 종전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던 주 6일제 수업과 비교할 때 주 5일 수업은 주말을 활용해서 평소 부족했던 교과활동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일 수업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가족과 함께 주말을 활용한 이용빈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5일 수업제 실시 5년이 지난 지금도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조차도 학원과 여러 사교육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불법 주말반 편성은 횡행하고 있고 사교육비가 감소하기는 커녕 여전히 매년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년 전 정부에서는 주 5일 수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일 방과 후 학습과 병행하여 주말을 활용하는 토요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경북도교육청과 관내의 학교 토요 방과 후 수업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한 첫 해인 2012년 참가율은 39.3%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6년도에는 27.1%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도내 사교육 참여율은 64%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비용은 지난 2013년 18만 7,000원에서 2016년 19만 3,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경상북도 관내 학생 사교육비 현황(2013 ~ 2016)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	64.3	64.5	64.5	64.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18.7	19.0	19.1	19.3

자료 : 교육부, 경북교육청

토요 방과후수업의 목적은 정규수업 이외에 학생들에게 교육, 돌봄활동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이었으나 당초 목적과 취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요 방과후수업 참가율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토요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토요 방과후수업의 폭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계해서 추진해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수업이 주말 수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평소 학교교육에서 부족했던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며, 학생에게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지 않는 전인교육의 산 장이 되도록 운영될 때 성공적인 토요 방과 후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돌봄이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일수록 토요 방과후수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인데도,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해온 토요 방과후수업 등 토요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 2016년 종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학원, 교습소에서 공부할 때 학원조차 없는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아이들은 컴퓨터, 휴대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으며,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라도 작년에 중단된 토요 방과 후 수업 예산 지원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 5일 수업제 정착에도 불구하고, 토요 방과후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행정 편의에 따라 학습콘텐츠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학습콘텐츠 개발이 전제되어야 토요 방과후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더 잘사는 경북,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문제는 개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17년 6월 12일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인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사랑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인중 의원입니다.

먼저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발전을 향한 도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우리 도정 방향도 새롭게 재점검하고 더 발전적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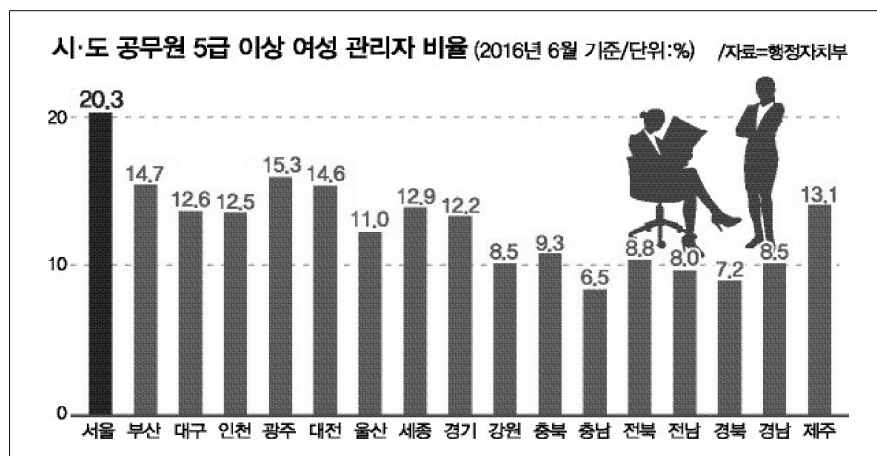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 대표성 확대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남녀 인구격차가 가장 큰 회원국일 뿐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는 145개국 중 11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부 차원에서 지난 10여 간 여성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왔음에도 성 불평등과 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양성평등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 각 분야의 정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그간 야심차게 추진되어 왔던 각종 여성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계획을 비롯한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경우 여성 대표성 확보와 관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6년 7월 기준 경북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입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단독 여성국 형태로 3급 이상, 국장급 이상의 직제로 이루어진 곳은 10개 곳에 달하고 있으나 경북은 4급 수준의 준 국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경북 여성정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여성들이 각종 사회구조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경북도는 수사적인 표현으로써 양성평등만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한과 예산 등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주요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도 본청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예산부서 25%, 인사부서 25%에서 2017년에는 예산부서 22.7%, 인사부서 22.2%로 오히려 주요부서의 배치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 및 여성부서 배치는 2014년에 44.4% 수준에서 2017년에는 51%로 증가하여 결국 여성 관련부서 위주로만 배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성 위주의 편중 인사방식이 경북도가 지향하는 인사정책입니까?

뿐만 아니라 도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외부인사 활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남성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본청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5.4%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개별 위원회별로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16.7%,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8.3%에 머물러 있으며, 단 한 명의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3개에 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지역 성평등지수도 최근 5년간 경북은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과를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평균 73.5점에 비해 경북은 71.5점으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종합)

등 급	지 역(가나다 순)
성평등 상 위 지역(4)	강원, 대전, 서울, 제주
성평등 중상위 지역(4)	광주, 부산, 전북, 충북
성평등 중하위 지역(4)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성평등 하 위 지역(4)	경북, 울산, 전남, 충남

경제활동분야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제주	강원	충북	서울	전북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충남	경기	경북	인천	경남	전남	울산
점수	75.6	75.6	74.0	73.6	72.5	72.0	71.8	71.3	71.3	70.7	69.8	68.8	68.8	67.2	66.2	57.4

의사결정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서울	대전	광주	제주	인천	대구	부산	경기	충북	강원	전북	울산	경남	전남	충남	경북
점수	43.3	42.7	33.2	32.5	31.9	29.9	28.4	27.7	27.2	27.0	24.4	22.9	21.2	20.0	18.5	17.9

교육 및 직업훈련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경기	서울	울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충북	경남	강원	충남	제주	전북	경북	전남
점수	96.1	96.0	95.6	95.2	94.8	94.8	94.7	94.7	92.9	92.7	92.4	92.4	92.4	91.6	91.0	88.9

복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제주	강원	대전	서울	부산	광주	충북	경기	전북	인천	대구	전남	경남	충남	울산	경북
점수	90.7	89.6	88.8	88.4	86.2	86.1	85.5	85.2	84.9	84.3	84.0	82.0	81.1	80.9	79.7	78.5

분야별 성평등지수 결과에서도 경제활동이 12위, 의사결정 16위, 교육 및 직업훈련이 15위, 교육복지 분야가 16위로 경북 여성정책은 그야말로 밑바닥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북은 유교적 전통을 내세우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부서에서조차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지역정서 운운하며 양성평등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도청이전을 계기로 여성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북여성가족프라자'가 2018년에 건립될 예정이어서 도의 여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프라자 신설에 맞추어 도 본청의 여성정책관실을 여성국으로 격상시키고 경북의 여성 리더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공평한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관리직급의 여성 진출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 합계 출산율은 전국 1.17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 역시 2012년 1.49명에서 2015년 1.46명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만 829명이 출생하여 전년대비 1481명 감소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30년 이내에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략기획단에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마련

하여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직만 개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세부사업들은 크게 달라진 바 없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은 미혼 남녀 만남 지원 및 결혼문화 개선,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 및 어린이 우대혜택 제공,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실시 등 대부분 행사성, 홍보성 사업으로 기존의 저출산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4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의 사례를 보면 출산장려금의 파격적 지원과 출생일 기준 즉시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일이 출생일 기준 부모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시·군과 30일 전에서 1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시·군 등 제각각인 실정입니다. 안동과 청송은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청도는 1년 전부터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이러한 조건을 완화하여 출생일 기준으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유인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 산후조리원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등 7개 시·군에 22개가 있으며,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179만 원 정도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어 2주에 40만 원에서 70만 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공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그마저 상주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설치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설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하여 동료의원인 김창규 의원께서 이미 지난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적극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도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는 가정 내 육아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공동육아를 책임지는 일·가정 양립 정책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도내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어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보육시설 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현재 총 2,083개의 보육시설 중 시간연장보육시설은 316개로 전체의 15.2%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20.4%에 비해 낮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대도시 및 광역시 단위와는 지역적 특성이 달라 단순히 보육 충족률이나 이용 수요가 그리 높지 않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지역 등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전북 26.7%, 전남 24.6%보다도 현저히 낮은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 차원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경북이 인구절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통해 경북으로 젊은 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우리 경북에서 무조건 키워준다는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소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인구정책 전담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일자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일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나 지역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 여성들의 고용여건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2017년 4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는 여성이 116만 4,000명으로 남성 113만 2,000명보다 3만 2,000명이 많으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3.3%로 남성 76.1%보다 22.8% 포인트 낮고, 여성 고용률은 51.4%로 남성 73.1%보다 21.7% 포인트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경북여성의 고용률이 2012년 52.1%에서 2017년 51.4%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오히려 2.2%에서 3.7%로 증가하고 있어 도내 여성들의 일자리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일자리사관 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일자리 창출 성과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전체 좋은 일자리 수 2만 9,611개 중 5,595개로 18.9% 수준에서 2016년에는 3만 5,954개 중 5,760개로 16% 수준으로 여성의 좋은 일자리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취업 실적 역시 2014년에는 51.7%, 2015년에는 50.2%, 2016년에는 35.3%로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여성이 행복한 경북’이라는 지사님 공약사항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센터 및 기관은 각종 취업 및 경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피부관리사, 한식조리기능사, 홈 베이커리, 천연화장품, 아이돌보미, 카페 창업 등 여성관련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서 여성의 취업과 창업은 용이하지만 이직이 빈번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위주여서 단기교육과 취업알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구인구직 통계와 구직여성 및 구인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도내 구인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은 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인력을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은 사무직을 선호하는 등 여성일자리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괴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기업 및 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간에 공동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과 프로그램 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가 주도하여 도내 여성 취업지원 기관 간 협업 시스템 구축과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체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공감하고, 우선 여성들이 행복한 경북과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정책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에 있었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년 6월 12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념하면서 광복을 위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과 후손들의 삶마저 송두리째 내던졌던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애환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서는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를 ‘경북의 혼’이라 표현하시고, “경북은 한국정신의 창이요, 경북인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경상북도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주창하며 “경북사람이 나라를 지킬 때 서울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자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국 경북의 광복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소외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년 전 본 의원이 광복회원들에 대한 처우가 타 시·도에 현격히 뒤떨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한 바, 다소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방치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도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끄럽습니다.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남에서는 수권자와 배우자의 의료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충남과 전북의 경우는 수권자만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고 경기도는 수권자와 배우자 공통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20만 원, 강원도와 충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경북에서는 수권자와 배우자 공통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며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사적지 답사 지원에서도 광복회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도지부의 답사 예산은 3,000만 원이고 무공수훈자회는 4,000만 원, 월남참전자회는 3,0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광복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광복회 가족을 별 낮이 없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신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준공·개관됩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위업을 기리고 광복회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서도 과연 호국 경북답다는 일신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약 20개월 후면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축사업 기획으로 부산한데 경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독립운동의 성지답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안동댐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명제하에 속전속결 밀어붙이기식 토목공사로 저수면적 51.5km², 목포시의 전체 면적보다 더 큰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안동 전체 농경지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안동댐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담수가 시작된 1974년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이었던 예안과 도산 등 6개 면 54개 마을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수장되었습니다. 줄지에 터전을 잃은 3,144가구 2만 644명의 실향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때부터 27만을 자랑하던 안동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사람의 희생과 애환을 마중물 삼아 저장했던 물을 40년간 묵묵히 구미를 비롯한 산업화 기지에 공업용수로 흘려보냈고 낙동강 700리 유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로 제공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동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제물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는 안동호 주변 231 km²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다. 2천만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은 2010년에 이미 부분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안동호 주변만은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일절 불허된 채 40년을 지내왔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동댐 위아래가 모두 엄격한 규제 하에 놓여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듯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작 댐 물그릇 바로 위에 지어진 영풍 석포제련소만은 어떤 규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을 시작하여 2012년 기준 연간 아연피 35만 톤, 황산 60만 톤 등 비철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 톤으로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해당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의원님께서 2015년 제278회 정례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석포제련소는 오랜 세월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2013년 기준치 이상의 셀레늄을 배출해 환경부에 적발되었고 2014년에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 의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및 토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련소 주변 지역에 토양 정화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중금속 농도가 지역의 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고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안동, 봉화, 구미, 대구, 부산, 태백의 시·군의회 의원들이 낙동강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배출한 오염물질과 오염된 토양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었고 안동댐 바닥에 퇴적되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영풍은 낙동강 최상류 태백 지역에 사업비 5,000억 원을 들여 귀금속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영풍 석포제련소는 철거되어야 마땅합니다.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나선 신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경상북도가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했던 규제를 40년간 막무가내로 지속해 온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하루빨리 해제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설명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기필코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동호 전체를 준설해야 합니다. 20년 전 제128회 임시회에서 남재수 선배 의원님께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인식이 저급하던 1970년대 초반에 주민들만 내보낸 채 무작정 담수를 시작하여 안동호에는 온갖 오물들이 그대로 잠겼습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물질까지 40년간 퇴적되었다고 하니 안동호 바닥은 문자 그대로 최악의 상태일 것입니다.

안동댐 준공 시 총저수용량이 12억 4,800만 m^3 였는데 2008년 기준 총저수용량은 12억 4,250만 m^3 로 550만 m^3 가 감소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최신 실측자료로 다시 계산한다면 아마도 분명히 물그릇은 그보다도 더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줄어든 그 체적만큼 퇴적토가 쌓인 것이고 그 퇴적토는 오염된 상태일 것이라는 게 긴 세월 낙동강과 안동호 수질환경을 감시해온 환경단체와 지역 내 시·군 의회의 주장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자원공사는 안동호로 인해 엄청난 이윤을 창출했음에도 안동호에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데는 단 한 푼도 지출한 바 없었습니다. 이제 안동호에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지 않고는

1천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결정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경상북도가 대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시 시대를 개막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 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대다수 중앙정부 소속 기관들과 공기업들은 여전히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과 대구를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병무청, 중소기업청, 조달청, 관세청, 기상청 등 정부 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재 정부 기관과 공기업들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해서 이 기관들이 경북본부를 분리 신설해서 경북지역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끈덕지게 요구해야 합니다.

때마침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강남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년 전 본 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차 거론합니다.

안동 강남지역의 중학교 문제는 탁상행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한 번의 오판이 얼마나 일을 크게 그르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문제를 연구하면서 18년 전 경북 교육청의 근시안과 무책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94년 10월에 지정된 안동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1만 4,253㎡의 중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학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부지매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2001년 1월 개발사업계획은 변경되었고, 학교용지는 공동주택용지로 비싼 값에 매각되었습니다. 2003년에 개교한 강남초등학교는 개교 5년 만에 학생 수가 1,130명에 달했고, 중학교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판단했던 교육당국의 안목에 지역 시민들은 실소했습니다.

안동시 강남동은 2017년 6월 현재 3,738세대, 1만 4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신시가지입니다. 또한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배 후에는 3,618세대, 7,599명이 거주하는 남선면과 임하면, 남후면이 연접해 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므로 7,356세대, 1만 8,085명이 거주하는 독립 학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초등학교는 36학급, 989명이 재학 중인 바 안동 소재의 초등학교 중 두 번째로 큰 학교이고, 지역 내 중학생 수는 538명입니다. 대규모 초등학교와 3개의 공·사립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유독 중학교만 개설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9개 학급 규모에 달하는 남녀 중학생들이 매일 아침 전혀 다른 생활권인 강북 지역 곳곳에 산재한 중학교로 최단 3.5km에서 최장 7.5km의 거리를 뿔뿔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봐 주십시오.

안동시내 중학교 현황



일부는 부모가 등·하교를 도와주지만 상당수는 버스를 갈아타 가며 장시간 등·하교해야 하고, 또 적지 않은 학생들은 낙동강 인 도교의 찬바람을 맞으며 긴 시간을 걸어서 등·하교해야 합니다. 보다 못해 강남지역 학부모들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강남중학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각계에 제출했습니다. 서명록입니다.

하지만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경북교육청 적정 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강북지역의 기존 중 학교 학급 감축에 따른 타 공·사립 중학교 및 지역민 동창회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학교 신설은 어려운 실정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답변의 근거를 들여다보며 ‘아, 이분들에게는 강남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은 애당초 안중에 없었 구나.’ 하는 생각에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강남지역에 중학교가 신설 되면 강북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급감축과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생활권인 강남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을 외면해도 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구감소 추이로 인한 교육행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생활권인 강남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만 마냥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동 교육의 최대 현안인 강남지역 중학교 설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날 근시안적 행정으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던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신설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기된 몇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첫째, 강남동 소재 성희여자고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하지는 안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학교와 재단의 고뇌에 찬 결단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모교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을 동창회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성희여자고등학교의 기존 학급 수인 18학급 내에서 중·고 병설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연 18학급으로 중·고 병설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학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고생들이 독립건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립재단이 교사 신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경북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중학교를 신설하든지 강북의 공립중학교 1개교를 강남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는 있기 마련이므로 민원 발생 소지와 선결요건들은 상존할 것입니다. 다만, 부지확보라든가

강북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갈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부에 내재된 사안들은 안동시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낼 것입니다. 따라서 성사여부는 전적으로 경북교육청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4년 만에 또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규정에만 대한 경직된 해석과 적용에 따른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중학교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고전적 교육철학이 묻어나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존의 법과 규정이 현실여건에 맞지 않다면 법과 규정을 보다 신축적으로 재해석하고, 때로는 고쳐서라도 문제를 해결해내겠다는 ‘사람 중심 경북 세상’의 희망적인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강남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내해왔던 지난 15년간의 고통을 헤아리셔서 중학교 설치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교육청이 비관적인 미래관에서 벗어나 희망이 용솟음치는 새로운 경북교육으로 방향을 재정비하여 선택지를 제시해 주신다면 안동의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화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7년 6월 13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3백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 정부 출범과 경북도정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못한 파격적인 소통 행보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고, 대구·경북의 지지율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높습니다.

최근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확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고 중앙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고용-분배가 함께 가는 골든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첫 번째로 지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간 경북도에서도 민선4기부터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등 공공부문 주도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 바 이에 따른 경북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북도민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을 찾아 발굴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업국가 조성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 저출산대책과 함께 3대 핵심기조로 정했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태는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조선, 철강 등 예전의 주력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경상북도 도 지역의 주력산업을 새롭게 개편하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제 초기단계의 대응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우리 지역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원전문제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탈 원전을 공식선언하고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으로 원전폐기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그간 추진해온 원자력클러스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무엇보다도 여야를 떠나 지역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정파적 이해관계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변화된 정치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은 합치된 마음으로 협력이 절실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지역사업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전 정부시절에서 경북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무사안일함과 허술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새 정부를 설득할 논리적 무장과 치밀한 전략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테크노파크의 황당한 부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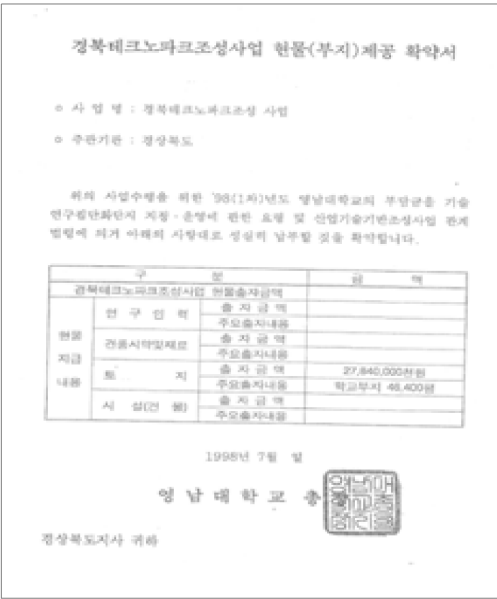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9년 지역의 산업과 연구기관 등의 융합을 통한 기업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에서는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를 설립하였고, 경북테크노파크 설립 당시 영남대학교에서는 학교부지 출연을 약속하여 영남대 부지 내에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경북테크노파크는 영남대와 부지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경북테크노파크는 2004년 이후

밀린 임대료 10억 4,000만 원과 앞으로 매년 9,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자료1> 경북테크노파크 부지제공 확약서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 1998년 7월 경상북도의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영남대학교는 학교부지 4만 6,400평, 시가 278억 4,0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한다는 총장명의로의 확약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1998년 8월 경북테크노파크 법인설립 허가가 났고, 9월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테크노파크를 영남대 부지 내에 설립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 보시죠.

<자료2> 1998년 최초 부지임대차계약서

<문자1> 부지임대차계약서

부 지 임 대 차 계 약 서
(1998.12.1)

임대차선약 당사 : 경상시 무릉동 신명학교와 새빛지(학교부지 46,200㎡)

구분	종목	금액 (원)
보증금 500	임대	50,000 (50,000)
임대료 11	학교	87,212 (87,212)
임대료 50	학교	5,950 (5,950)
임대료 60	학교	4,780 (4,780)
임대료 60	학교	712 (712)
계		142,654 (142,654)

이 계약의 당사자 임대인을 "새빛지" 하고 임차인을 "경북" 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은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제2조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은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은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은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제3조 임대차선약 1회 계약기간에는 무상임대 하고, 2회 계약기간부터는 사용료 100%로 임대한다. 임대차선약 1회 계약기간에는 무상임대 하고, 2회 계약기간부터는 사용료 100%로 임대한다.

제4조 임대차선약 계약기간의 종료시 임대차선약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에 필요한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에 필요한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제5조 임대차선약 임대료는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에 필요한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에 필요한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제6조 임대차선약 임대료는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에 필요한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임대차선약 사용목적에 필요한 (30)일씩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같은 해 12월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경북테크노파크 사이에 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11월 30일까지 무상, 추후 5년씩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쌍방 합의에 의한

임대료 결정입니다, 재계약한다는 내용의 부지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를 근거로 영남학원 측은 2016년 9월 부지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도민의 혈세를 임대료로 받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 설립 당시 부지 무상제공 확약에서부터 지난해 9월 임대차계약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황당함을 넘어 크나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초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영남대 측의 확약에 따라 영남대 부지에 경북테크노파크를 설립하게 되었고 영남대는 경북테크노파크를 유치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확약이 없었다면 영남대학교의 부지 내에 경북테크노파크가 설립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98년 8월에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고 영남대가 불과 4개월 뒤인 12월에 경북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영남대와 영남학원 측에서는 경북도와 도민을 기만 하였고 경북도가 영남대와 영남학원에 특혜를 주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경북도는 영남대의 부지 무상출연 확약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영남대에 임대료를 주는 상황이 된 것은 경북도가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영남대 부지에 건립된 경북테크노파크 건축에는 정부와 경북도의 예산 등 17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70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도 정작 출연받은 토지는 등기하지도 않아 토지 소유권 없이 지상권만 가진 채 운영되고 있는 것도 역울한 판에. 사진보시죠.

<자료3> 2016년 부지임대차계약서 (재계약)



<자료4> 2016년 부지임대차계약서 내용

제8조(관련법규적용)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2항에 의거하여 '총조된 시설물은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갑'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해 9월 새로이 체결한 부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북테크노파크는 축조된 시설물을 영남대에 기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보고 본 의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북도가 출연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어떻게 사립대학의 거짓된 약속에 놀아나고, 170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건물도 부지 임대만료 시 사립대에 기부한다는 영남대의 모습에 놀랐고 이런 독소조항을 수용한 경상북도와 테크노파크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현재 경북테크노파크 이사장은 경상북도지사와 영남대 총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공동이사장에 영남대 총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설립을 위해 정부·지자체·대학이 총 579억여 원을 출연하였는데 정부가 전체의 44%인 255억 원을, 경상북도가 113억 원을, 경산시가 70억 원을 출연했고 대구한의대, 경일대, 대구대, 대가대 등 4개 대학은 각 28억여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영남대가 부지를 무상 출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결국 5%, 29억 원밖에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영남대 총장이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법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44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 본바 특정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

습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예산지원금 243억 원 중 64%인 156억 원이 경상북도 교통장애인협회,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 시각장애인협회, 경상북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상북도 한국농아인협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39개 단체에는 36%인 87억여 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부 단체에 대해 과도하게 보조금 지급이 편중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의 법인이 너무 많은 산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법인의 경우 산하에 복지촌,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2016년 기준 보조금 50여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밖에 B법인은 산하 3개 시설에 22억 9,000만 원, C장애인협회는 산하 5개 시설에 7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동일한 복지법인에서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 복지법인들이 기업화되어 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해서 연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내 장애인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리 감독이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장애인 복지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일부 복지법인 및 장애인단체에 편중된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한 공평·타당한 분배기준 마련과 도비 지원이 많은 기업형 대규모 복지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는 전직 장 모 회장 재임시기인 2008년 8월 5일에 포항시에 소재한 건물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전세권을 4순위로 설정했습니다. 그 후 2014년 7월 1일 임차 건물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5년 2월 24일 제3자에게 낙찰됨에 따라 전세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우선변제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임차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임차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경북도는 2015년 3월 24일에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 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법리 검토와 함께 보조금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번 임차보조금 사태 유발에 책임 있는 전직 도 지체장애인협회 장 모 회장은 2014년에 발생한 지체장애인협회 명칭 중복사용 관련 사태를 일으킨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4순위로 전세권을 설정

하는 등 법인에게 피해를 입힌 핵심 책임자인 장 모 회장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가 설립한 단체인 사단법인 경북 장애인권익협회에 지난 2년간 10억이 넘는 도비 보조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북도의 무사안일한 장애인복지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건물을 임차할 경우 반드시 1순위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위험 부담이 큰 제4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법인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8년 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4순위 전세권 설정 경위 파악과 2014년 장애인단체의 갈등과 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VII. 5분 자유발언

□ 2017년 6월 26일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장용훈 의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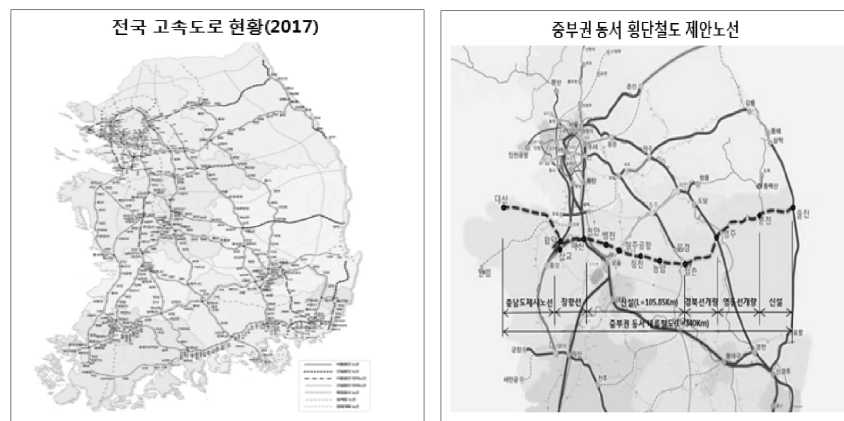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설렘과 기대로, 때로는 걱정과 우려로 새로운 정부,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북도도 지역발전의 명운이 걸려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서로 분리된 경제지형을 통합지형으로 변화시키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도교통망 구축은 21세기 친환경 교통물류 수단으로 대한민국 제2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인프라이며,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나 경북 북부지역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거미줄처럼 교통망이 깔려있지만 유독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은 열악합니다. 특히 울진은 전국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역입니다. 정부는 경북도와 울진군에 이러한 기피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SOC사업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후된 지역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울진까지 총연장 340km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우리나라 물류지도를 새롭게 하고 중부권 동서 신산업시대를 연결하는 지역성장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본 의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구간에 대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기간 동안 7조 57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 1,5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하여 노선 통과지역 12개 시·군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포럼을 결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 도 차원에서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에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조속한 철도건설 사업을 위해 2018년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노선이 반드시 도지사·시장·군수 추진위의 당초안대로 울진~서산 노선으로 추진되도록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영주~분천~울진으로 연결되어야 기존 중앙선, 태백선, 동해선을 이용한 최단거리 추가 신설로 예산이 절감되고 한울원전의 물동량 이동도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울진군민을 비롯한 3백만 경북도민의 열망이 경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적 공감을 통해 철도건설을 이루어내는 힘으로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년 6월 26일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박현국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도내 우박 피해지역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 대책 및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관련 》

봉화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진에서 보듯 6월 1일 강풍을 동반한 최대 5cm 크기의 사상
초유의 우박으로 봉화, 영주, 문경, 영양 등 도내 11개 시·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원과 논밭 등 축구장 9,300여 개에
달하는 6,644ha에 달하는 면적이 그야말로 쭉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행정부지사, 실무국장 등의
빠른 피해현장 방문 위로와 도청 직원들의 복구일손 지원 등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봉화지역은 3,500여 농가에 3,386ha의 큰 피해를 입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지역이자 도내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본 의원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정해져 그대로 방치되어 온 정부의 복구비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해 농심은 또 한 번 피명이 들고 있습니다.

현행 우박피해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을 보면 농약대는 300평당 일반작물 2만 2,000원, 채소 3만 원, 과수는 6만 3,000원에 불과해 한 차례 방제비 수준 밖에는 되지 않고, 피해율 50% 이상의 대규모 피해 농가의 생계비 지원도 80만 원에 불과하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발생한 피해복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모호한 해석기준에 따라 경상북도 또한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대책을 못 내놓는 등 농민들의 상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박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도지사께서도 피해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열매와 잎, 수피까지 벗겨져 회생이 어려운 농작물과 무너진 비닐하우스, 축사 등 1년 농사가 이번 우박피해로 송두리째 망가지고 향후 몇 년간 농작물의 수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는 규정과 틀에만 얽매어 농심을 저버리지 말고 현실에 맞는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니다. 또한 우박 피해농가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봉화, 영주, 문경, 영양 등 도내 우박피해 11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한 복구 지원책인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인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폐농의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피해지원, 재난지역 지정 등 피해현장 농가들의 애통한 목소리를 지사께 다시 전합니다.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경북도의 내실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과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6월 26일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봉화,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사과, 수박 등 6,644ha 농경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피해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에다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다가올 태풍까지 생각하면 농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2017년도 현재 5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20%의 보험료 자부담과 까다로운 보상 절차 탓에 가입률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012년 7만 5,000가구에게 2016년 18만 가구로 늘었으며 올해는 2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평균 가입률은 27.5%이며, 품목 중에는 사과가 78.8%로 가장 높았고 배가 78.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2016년 3만 2,114농가가 가입했으며, 가입한 농지면적은 3만 2,505ha, 보험료는 1,1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과 대상품목에 따라 가입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보상 기준은 까다로운 반면 피해보상률이 낮아 가입을 꺼리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해발생이 빈번한 시·군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재해보험 가입 산정방식의 문제입니다.

현행 보험 상품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단지 같은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박 피해를 입은 봉화, 영주의 경우 보험요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 3배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습 재해지역 시·군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해 없는 지역까지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동차보험처럼 전국 단위로 보험금을 균일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합니다.

매년 보험사가 가입 작물의 수를 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북의 경우 대상품목이 42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려운 농촌 경제사정을 감안했을 때 현행 20%대의 보험료 자부담률은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늘려서 농가 자부담률을 10%선으로 낮추어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까다로운 보상방식의 개선과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폭염, 우박 등 자연재해가 상시화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민

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업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불합리한 할증제도 개선 및 폐지,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 국비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18건)		89
□ 승	인	안(2건)		185
□ 동	의	안(1건)		193
□ 규	칙	안(1건)		199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윤성규 의원 외 13명(2017. 6. 1)
-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규 의원 외 9명(2017. 6. 1)
-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6. 1)
-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6. 1)
- 경상북도 아동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구 의원 외 10명(2017. 6. 2)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6. 1)
-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6. 1)
-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2017. 6. 1)
-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최병준 의원 외 14명(2017. 6. 1)
-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10명(2017. 6. 1)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창화 의원 외 17명(2017. 6. 1)
- 경상북도 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진복 의원 외 12명(2017. 6. 1)
-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용선 의원 외 12명(2017. 6. 1)
-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용훈 의원 외 10명(2017. 6. 1)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용선 의원 외 16명(2017. 6. 1)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17. 6. 1)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17. 6. 1)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17. 6. 1)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화장품산업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북도내 화장품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 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화장품 특화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교육·생산·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이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화장품효능임상연구센터, 화장품혁신소재·인공피부융합연구센터, 해양기능성 융합화장품소재연구센터, 맞춤형 스마트화장품 융합 연구센터, 화장품 무역상담 전시·홍보관 등 화장품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계획
3.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
5. 화장품 인증제도
6. 화장품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화장품산업의 진흥

제5조(전문 인력양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도지사는 화장품 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화장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8조(박람회 참가 지원) 도지사는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화장품산업 제품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사유치 및 지원 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할 수 있다.

1. 화장품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2. 화장품 관련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3.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화장품 인증제도)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화장품 인증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필요한 비용

④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화장품 인증심사 수수료
2. 화장품 인증심사 관리수수료

⑤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재해,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장품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과반 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화장품산업 업무담당 실·국장(당연직)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화장품산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4.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화장품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장품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22조(설치)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설 등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위치) 시설의 주된 위치는 경상북도 내 소재에 두며, 필요시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24조(사업)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은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경상북도 C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경영인력 양성교육
6. 창업보육 및 화장품관련업체 유치·육성 지원
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8.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9.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10. 그 밖에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화장품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협회, 기업 또는 법인(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2.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6조(수익사업)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은 제21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지원 등) ①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 납부방법 및 부과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보고 및 감사) ① 도지사는 시설의 경영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 받고 서류의 제출 요구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자의 대표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流用)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태양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태양광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태양광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관련 기업 유치,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태양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태양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태양광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2. 태양광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태양광산업 인력양성 지원
4. 태양광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5. 태양광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6. 태양광 관련 기술 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7. 태양광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8. 태양광 설치 지원
9. 그 밖의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심의)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태양광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태양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제10조제2호 중 “해당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의한”을 “해당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보상금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1. ~ 3. (생략)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도(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u>다음 각호의 사항을</u> 확인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현행	개정안
⑥ (생략)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 3. ~ 9. (생략) 제11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1. (생략) 2. ----- 해당 지방공기업, 출자·출연한 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한----- --- 3. ~ 9. (생략) <삭제>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 1인을 포함한 9인”을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3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를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 -----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본부·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 ----- 각 1명을 포함한 9명----- ----- ----- --. ② ~ ④ (생략)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13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 ----- -----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6항에 따른 ----- ----- -----.
제11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 예산의 범위에서 ----- ----- -----.

경상북도 아동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아동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하 “자립지원아동”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된 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2.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4. 그 밖의 아동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계획은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자립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정착금의 지원

4.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 준비를 위한 주거 제공

2. 직업체험관 등 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생활·교육 지원

4. 심리진단, 집단상담, 치료상담 등 지원

5. 인권·권리옹호 및 법률 지원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아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사업

8.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센터 업무 중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지원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지원아동의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익사업) ① 센터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사례관리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사용료,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익사업의 취소) 도지사는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운영에 사용하되 자립지원아동의 복지증진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금 사용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 및 수익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는 자체적으로 사례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지원아동 선정 및 퇴소 결정
2. 자립지원아동의 사례관리 계획
3. 자립지원아동의 퇴소 후 사후관리 계획
4.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협의체 위원)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작업, 언어, 물리, 심리, 특수교육 등의 치료사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
3.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사례관리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 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2항제1호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23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 및 분할횟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및 분할횟수를 공제 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u>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u><후단 삭제></u>
제23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⑫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u>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u>	제23조(특별휴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 -----. <u>다만, 제1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u>5일</u>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u>15일</u> <신 설> ⑬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1. ----- <u>10일</u>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u>20일</u>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u>20일</u> ⑬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 여야 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안 제23조제12항제3호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⑫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 18조제2항에 따른다. <u>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u>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u>5일</u> 2. <u>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u> <u><신 설></u>	제23조(특별휴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 ----- ----- ----- <u>다만, 제1호의 휴가 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 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u> 1. ----- ----- 10일 2. <u>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u> 3. <u>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u>	제23조(특별휴가) ① ~ ⑪ (개정안과 같음) ⑫ ----- ----- ----- ----- ----- ----- <u>다만, 제1호와 제3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휴가 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u>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u>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u>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2항제1호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제23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 및 분할횟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및 분할횟수를 공제 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촉진”을 “정보접근성을 향상”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총괄부서”란 경상북도 정보화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경상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에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총괄부서, 주관부서”로, “운영하여야 하며”를 “운영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은”을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을 “도지사”로,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을 “이용자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을 “도지사”로 “총괄·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업무담당과장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담당 부서명”을 “주관부서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을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을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을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를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제8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6조)제3항 중 “담당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제2장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앞에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삽입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를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2항 중 “인터넷 민원처리”를 “전자민원 처리”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실에서 총괄·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를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3항 중 “민원실장은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제2항 중 “인터넷민원”을 “전자민원”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삭제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앞에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삽입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제2항 중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를 “이용자”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을 삭제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앞에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을 삽입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제1항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등”으로,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6장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를 삭제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앞에 “제6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를 삽입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1항 중 “노출”을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 제2항 중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을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제1항 중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을 “도지사는”으로, 같은 조(종전의 제18조) 제2항 중 “정보화업무담당

과장은”을 “도지사는”으로, “매일 변동자료 및 매주 전체자료를
복사”를 “주기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백업”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규정”을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상북도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u>	<u>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u>지역정보화를 촉진</u>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정보접근성을 향상</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자민원'이라 함은 <u>민원사무처리 에관한법률</u> 제2조 및 경상북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 되는 민원을 말한다.	4. ----- 「 <u>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u> 」----- ----- -----.
5. '개인정보'라 함은 <u>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 <u>제2호</u> 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 한다.	5. ----- 「 <u>개인정보 보호 법</u> 」 제2조제1호-----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 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민원 창구를 말한다. 〈신설〉 〈신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② (생략)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 8. “총괄부서”란 경상북도 정보화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경상북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의회에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총괄부서, 주관부서 ----- 운영할 수 있으며-----. ④ ----- 도지사는 -----.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u>정보화</u> 업무담당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u>이용자들의</u>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u>정보화</u> 업무담당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u>총괄·관리</u>하여야 한다. ② <u>정보화</u> 업무담당과장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u>담당부서명</u>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u>정보화</u> 업무담당과장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u>도지사는</u> ----- ----- <u>이용자들</u> ----- -----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u>도지사는</u> ----- ----- ----- <u>관리</u> -----. ② <u>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u> ----- ----- <u>주관부서명</u> ----- -----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u>도지사는</u> ----- ----- ----- ----- -----.

현행	개정안
② <u>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u>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요시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u>도지사는</u>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u> ----- ----- 9. <u>그 밖에</u> 공익을 침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 -----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u> <u>〈신설〉</u> <u>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u> ① 도지사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u>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실에서 총괄·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u> ③ 민원실장은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u>〈신설〉</u>	<u>〈삭제〉</u> <u>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u> <u>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u> ① ----- -----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 -----. ② ----- 전자민원 처리 ----- -----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 -----. <u>제9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9조(전자민원처리) ① (생략)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민원신청시의 수수료 납부정보를 통해 납부사실이 확인되거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신설〉 제12조(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① (생략) ② 도지사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자민원 ————— ————— ————— ————— ————— —————.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4조(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용자 —————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현행	개정안
<u>제13조</u> (생략) <u>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u> 〈신설〉 <u>제14조</u> (생략) <u>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u>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u> ② (생략) <u>제6장 외국어홈페이지 운영</u> <u>제16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u>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u>	<u>제15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 〈삭제〉 <u>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u> <u>제16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 <u>제17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u> ① ----- ----- ----- <u>지역주민 등</u> ----- -----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u>제18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주관부서</u> ----- ----- -----.

현행	개정안
<u>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u> 〈신설〉 <u>제17조(개인정보보호)</u> 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u>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u> ①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 및 매주 전체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u>제19조(비밀번호관리)</u>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u>제6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u> <u>제18조(개인정보보호)</u> ① ----- ----- -----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 -----. ② -----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 <u>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u> ① 도지사는 ----- ----- -----. ② 도지사는 ----- ----- 주기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백업----- -----. <u>제20조(비밀번호관리)</u>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상북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청소년 이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불법·유해 게임과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등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예방과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성인·본인 인증 없이 가입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만남을 주선하는 랜덤채팅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한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9. “관리적 조치”란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통계시스템, 사업 홍보, 신청접수, 선정, 보급, 정산, 사후관리 등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추진 사업관리를 말한다.

10. “스마트쉼 센터”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 제 30조의6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운영 중인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안전 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 2 장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대한 사항
4.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
5. 게임·인터넷·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에 대한 주요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9조의 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자문
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의 평가·개선 방안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의 기술적, 관리적 강화 방안
4. 게임·인터넷·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의자료·의견청취) ① 전담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제8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및 연령 등급 초과 게임에 대해서는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9조(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청소년 개인별로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여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또한,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해 제1항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음란물 차단)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5.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제11조(안내문구의 표시) 도지사는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컴퓨터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2조(설치통계시스템)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동관리를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 또는 보관할 수 없다.

1. 컴퓨터별 접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

2. 청소년별 컴퓨터·게임·인터넷의 이용시간

③ 도지사는 총소유비용 절감에 유리하도록 설치통계시스템을 자체구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차단수단의 문제점 또는 보완필요 사항을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하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건의내용 및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 4 장 지원·운영 체계

제14조(상담·치유 서비스 등의 제공)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가정 내 컴퓨터 이용자에게 정보화역기능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신청 단계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청소년 또는 보호자(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해당)에게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4조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부동의 또는 제1항을 불이행하는 신청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 전문직위 및 위탁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의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배치,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박사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기사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적 조치를 위해 청소년보호 재할 관련 재단, 법인 및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입찰 공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발주 계획, 사전 규격 및 평가기준을 사전공개 한 후 입찰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개발 촉진) 도지사는 제8조의 게임 목록과 제10조의 사이버음란물 목록의 수량에 대한 규격과 평가기준을 매년 강화시키는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평가 방법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 배점 한도를 90%로 하고,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Bench Mark Test)을 통한 객관적 산출방법으로 정량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평가에 신용등급, 수행실적 등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 배점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평가 업무 및 예산의 경감을 위해 2년 이상의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인증 관련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인증 취득 제품과 제안·평가 제품의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허위제출을 검증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제6항의 서류와 평가세부내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서류제출 사항을 공개한다.

제20조(통신사업자 제공 서비스·물품) 도지사는 기간·별정·

부가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최우수 서비스 또는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도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복지지원법」)
2.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정신보건법」)
3. 경북스마트쉼센터(「국가정보화기본법」)
4.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기본법」)
5. 중독포럼,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등이 추천하는 도내 전문가의 소속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 기관 등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에 대한 예방교육, 연구결과, 이용습관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감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 확대 적용례) 제4조제2호의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특정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 4월
부터 도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보급률이 증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
21조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관련 전문기관 등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분야의
최소 3년 이상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 및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제2호의 사회공헌자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 여건조성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이용
4.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5.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3.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행정부지사 및 시장·군수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자 포상 및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사회공헌자 포상과 사회공헌인증을 한 때에는 그 계획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제4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영일만항을 환동
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해양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특화항로”란 포항시장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제항로를 말한다.
5. “1차 연도 화물”이란 최초지원 대상 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6. “2차 연도 화물”이란 1차 연도 다음날부터 1년간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7. “순증화물”이란 최근 2년 동안 처리한 화물의 평균 실적 대비 순수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단, 2차 연도 순증화물은 1차 연도 화물 실적 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8. “신규항로”란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영일만항을 기항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간에 개설하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 서비스를 말한다.
9. “특정화물”이란 냉동·냉장화물 등 영일만항에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화물로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다른 항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 개설로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운항손실금
3. 영일만항에 신규로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신규항로 개설 장려금
4.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하는 이용장려금
5.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하는 국제물류주선화물 불륨인센티브

6. 특정화물 유치에 따른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
하는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특화항로 개설·운영에 따른 운항손실금 보조는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게 유류비, 용선료 등을 지원하되, 연간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2년까지로 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지원금은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주 1항차 이상, 6개월 이상을 운항한 경우에 지원하며, 항로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 선복비율에 따라 분할 지원한다.
 - 가. 원양 1억원
 - 나. 동남아 1억5천만원
 - 다. 연근해(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1억원
 - 라. 연안 5천만원
4.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용장려금은 화물 처리량에 따라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1차 연도는 100퍼센트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순증화물은 100퍼센트, 나머지 처리 화물은 50퍼센트를 지원하고,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각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3 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5. 국제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는 반기별 200티이유(TEU) 이상 처리하는 자에게 지원하고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1만원 이내의 금액으로써 매년 도지사가 포항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각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6.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1티이유(TEU)당 1만원 이내의 금액으로써 도지사가 포항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각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지원기간은 영일만 항의 연간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20만티이유(TEU)에 도달한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국제물류주선업자 에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이용장려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항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포항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의 지원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지원기준(제5조 관련)

1. 항로연장지원금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

가. 항차당 100티이유(TEU) 미만 적취 시(적취 보조)

-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 = (추가해상운임 + 항만시설
사용료 + 하역비) × 50%
- 지원 물량 = 100티이유(TEU) - 적재 물량

나. 항차당 100티이유(TEU) 이상 적취 시(하역비 보조)

-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 = 하역비 × 50%
- 지원 물량 = 적재 물량

2. 이용장려금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

구 분	유치물량(6개월간)	지원금액 (원/TEU)
이용장려금	1 ~ 1,499 TEU 이하	35,000
	1,500 ~ 2,999 TEU	38,000
	3,000 TEU 이상	40,000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주
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군민”이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
등록증에 주소가 울릉군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 여객운송 사업자를 말한다.
3.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로 울릉군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울릉군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말한다.
4.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 일반 대인운임과 차량운임,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5. “재정지원금”이란 「해운법」 제4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대상) ① 운임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승선일 기준 30일이상 경과한 울릉군민
 2. 제1호의 울릉군민이 비영업용 국산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을 승선하는 경우의 차량
-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4조(운임지원노선) 운임지원 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에 소재한 항(이하 “울릉항”이라 한다)과 국내 연안항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노선

2.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제1호의 노선을 포함한 독도리 동도 부두와 울릉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노선

제5조(재정지원금 분담) ① 재정지원금은 국비, 도비, 군비로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담하는 도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일정액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임)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에 관한 업무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군수에게 교부한다.

② 여객선사는 지원 받을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 신청한다.

③ 여객선사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할 재정지원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에 지급한다.

④ 여객선사로부터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재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9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과 변경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재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
북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3호 나목에서 따라 시장·군수가 관리·감독
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도지사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기구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에서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와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놀이기구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놀이기구의 균형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기구의 시·군별 균형 있는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및 포상 등) 도지사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온라인투표 이용수수료 지원)

-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경우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9조의3(온라인투표 이용수수료 지원)</u>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경우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및 유치원장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점검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및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
서관풍기분관”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독립도서관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란을 삭제하고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운영위원회”란 다음에 “경상북도립 영주
선비도서관운영위원회”란을 신설한다.

[별표 1]

도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5조제2항 관련)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산책길 4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안기천로 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용상분관	경북 안동시 경동로 88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들길 22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상서문1길 127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화령분관	경북 상주시 화서면 중화로 2193
경상북도립 영주선비도서관	경북 영주시 영주로60번길 38
경상북도립 영주선비도서관풍기분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152-1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서관명과 위치(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1] 도서관명과 위치(제25조제2항 관련)		
도	서	관	명	위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산책길 4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안기천로 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융합분관	경북 안동시 경동로 88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들길 22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상서문1길 127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화령분관	경북 상주시 화서면 중화로 2193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5조제4항 관련)		
도	서	관	명	위
경상북도립 영덕공공도서관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02			
경상북도립 성주공공도서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천로 15-11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	경북 영양군 영양읍 관수로 538			
경상북도립 의성공공도서관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길 44			
경상북도립 울진공공도서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7길 17			
경상북도립 울릉공공도서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 128-10			
삼국유사군위도서관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75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풍기분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152-12			
경상북도립 청도공공도서관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4			
경상북도립 철곡공공도서관	경북 철곡군 왜관읍 군청3길 13			
경상북도립 외동공공도서관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98			
경상북도립 청송공공도서관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			
경상북도립 예천공공도서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경상북도립 고령공공도서관	경북 고령군 고령읍 향교길 25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	경북 문경시 호서로 133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	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2508			
경상북도립 영일공공도서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1			
경상북도립 봉화공공도서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3길 6			
경상북도립 영천금호공공도서관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7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1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3~4급 란과 5급 이하 소계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3~4급	5		5		
5급 이하 소계	4,831	-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 학교	직급별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5,264	-				총 계	-	-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		-		
교육감	1		1			교육감	-		-		
일반직 계	4,864	-				일반직 계	-	-			
3 급	3		3			3 급	-		-		
3~4급	4		4			3~4급	5		5		
4 급	19	1	17	1		4 급	-	-	-	-	
5급 이하 소계	4,832	-				5급 이하 소계	4,831	-			
전문경력관 소계	6	-				전문경력관 소계	-	-			
연구직 계	6	-				연구직 계	-	-			
연구사	6	-				연구사	-	-			
특정직 계	393	-				특정직 계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	-	-	-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45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2조 중 “도립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로 한다.

별표 1 중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을 삭제하고,
“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문경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문경유치원	문경시 점촌로 60

경산압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597번지”를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38”로 한다.

별표 2 중 경산압량초등학교 위치란 중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597번지”를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3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설치) 경상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유치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tr> <tr> <td>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td><td>문경시 호서로 117</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td style="text-align: center;">설</td></tr> <tr> <td>경산압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td><td>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579번지</td></tr> </table> 【별표 2】 초등학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tr> <tr> <td>경산압량초등학교</td><td>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579번지</td></tr> </table>	명칭	위 치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문경시 호서로 117	〈신설〉	설	경산압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579번지	명칭	위 치	경산압량초등학교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579번지	제1조(설치) ----- 제11조에 따라 ----- ----- 특수학교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이하 “도립학교”라 한다) -----. 【별표 1】 유치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td style="text-align: center;">제</td></tr> <tr> <td>문경유치원</td><td>문경시 점촌로 60</td></tr> <tr> <td>-----</td><td>경산시 압량면 압록2로 38</td></tr> </table> 【별표 2】 초등학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tr> <tr> <td>-----</td><td>경산시 압량면 압록2로 38</td></tr> </table>	명칭	위 치	〈삭제〉	제	문경유치원	문경시 점촌로 60	-----	경산시 압량면 압록2로 38	명칭	위 치	-----	경산시 압량면 압록2로 38
명칭	위 치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문경시 호서로 117																								
〈신설〉	설																								
경산압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579번지																								
명칭	위 치																								
경산압량초등학교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579번지																								
명칭	위 치																								
〈삭제〉	제																								
문경유치원	문경시 점촌로 60																								
-----	경산시 압량면 압록2로 38																								
명칭	위 치																								
-----	경산시 압량면 압록2로 38																								

二 승 인 안 二

-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2017. 5. 31)
-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교육감(2017. 5. 3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이에 원안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1.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 세입 결산액 9조 1,086억 1천 3백만원
- 세출 결산액 8조 2,485억 5천 6백만원
- 차입잔액 8,600억 5천 7백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3,374억 1천 3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5억 3천 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71억 1천만원임.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7조 7,826억 8천 8백만원
- 세출 결산액 7조 1,816억 5천 5백만원
- 차입잔액 6,010억 3천 3백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3,222억 8천 5백만원과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55억 3천 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2억 1천 4백만원임.

(2) 기타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 등 6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5,983억 1천 9백만원
- 세출 결산액 5,558억 8천 1백만원
- 차인잔액 424억 3천 8백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151억 2천 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1천만원임.

(3)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운영)

- 세입 결산액 7,276억 6백만원
- 세출 결산액 5,110억 2천만원
- 차인잔액 2,165억 8천 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165억 8천 6백만원임.

나. 기금결산(통합관리기금 등 20종)

- 전년도말 조성액 7,174억 7백만원
- 당해연도 조성액 1,440억 4천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 1,019억 9백만원
-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 7,594억 6백만원임.

다. 채권결산

- 전년도말 현재액 1조 3,111억 7천 8백만원
- 당해연도 발생액 4,130억 5천 4백만원
- 당해연도 소멸액 3,999억 8천 3백만원
-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 1조 3,242억 4천 9백만원임.

라. 채무결산

○ 전년도말 현재액	1조 1,310억 6천 6백만원
○ 당해연도 발행액	2,796억 8천 9백만원
○ 당해연도 상환액	2,354억 8천 4백만원
○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 1조	1,752억 7천 1백만원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	516억 3백만원
○ 지출결정액	113억 9천 1백만원
○ 지출액	46억 7천 7백만원
○ 이월액	67억 2백만원
○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1천 2백만원임.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이에 원안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 결산액 4조 4,676억 5백만원
- 세출 결산액 3조 9,319억 6천 2백만원
- 차 인 잔 액 5,356억 4천 3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033억 8천 2백만원, 사고이월액 516억 6천 2백만원 및 계속비이월액 2,069억 3천 8백만원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보조금 집행잔행 15억 2천 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21억 3천 7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564억 3천 2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785억 9천 3백만원에 비하여 778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 공무원복지기금 36억 4천 6백만원
- 통폐합학교지원기금 1,527억 8천 6백만원

다. 채권현재액

2016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084억 5천만원으로
2015회계연도말 1,084억 7천 5백만원에 비하여 2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라. 채무결산

2016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894억 6천 1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말 1조 422억 3천 7백만원 비하여 472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마. 예비비 지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215억 9천 6백만원
- 지출결정액 49억 1천 6백만원
- 지출액 41억 6백만원
-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은 7억 5천 2백만원이고
미집행액은 5천 8백만원이며
- 그 사용내역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영주가흥초
부지소송판결금 공탁비, 유해성 우레탄 교체비, 지진피해
학교 지원 등임.

바. 재무회계 결산

- 1) 2016회계연도 말 재무회계 상 총 자산은 4조 9,162억 6천
7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총자산 4조 5,698억 1천만원에

비하여 3,464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5,613억 4천만원
- 투 자 자 산	2,626억 4천 2백만원
- 유 형 자 산	4조 902억 6천 8백만원
- 무 형 자 산	2억 3천 6백만원
- 기타 비유동자산	17억 8천 1백만원임.

2) 2016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8,948억 4천 4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8,343억 1천만원에 비하여 605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부 채	295억 6천 6백만원
- 장기 차입 부채	8,643억 8천 7백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8억 9천 1백만원임.

3) 2016회계연도 말 재무회계 상 순자산은 4조 214억 2천 3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순자산 3조 7,355억원에 비하여 2,859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고 정 순 자 산	3조 2,110억 7천 1백만원
- 특 정 순 자 산	1,564억 3천 2백만원
- 일 반 순 자 산	6,539억 2천 만원임.

4)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859억 2천 3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603억 4천 9백만에 비하여 3,462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수	익	3조 8,932억 5천 7백만원
- 비	용	3조 6,073억 3천 4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2,859억 2천 3백만원임.

二 동 의 안 二

-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2017. 6. 1)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2. 주요내용

①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신축』

- 목 적 : 청사 신축으로 해양관련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 및
균형발전 도모
- 사 업 비 : 2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 2019.
-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
- 취득재산 : 건물 1동, 건축연면적 8,800m²

② 『경북도립대학교 강의동 신축』

- 목 적 : 도립대학 3년제 전환(6개학과) 에 따른 강의실 확충
- 사 업 비 : 3,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8.
- 위 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경북도립대학교 내
- 취득재산 : 건물 1동, 건축연면적 1,204m²

③ 『폐선구간 기부채납』 에 따른 토지 취득

- 대 상 : 경북선 철도이설 폐선부지

- 위 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남본리 일원
- 목 적 : 경북선 철도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이관
- 취득재산 : 19필지(19,240㎡), 384백만원

(단위 : ㎡, 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대장가액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계			19,240		384,647,800			
1	예천읍 남본리	261-5	철	971	20,000	19,42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2	예천읍 남본리	260-2	철	13	20,000	26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3	예천읍 남본리	261-4	철	175	20,000	3,50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4	예천읍 남본리	195-4	철	17	20,000	34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5	예천읍 남본리	135-1	철	5,137	20,000	102,74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6	예천읍 남본리	136-3	철	1,769	20,000	35,38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7	예천읍 남본리	158-3	철	17	20,000	34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8	예천읍 남본리	99-1	철	5,550	20,000	111,00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9	예천읍 남본리	306-11	철	175	20,000	3,50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0	예천읍 남본리	100-2	철	122	20,000	2,44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1	예천읍 청북리	1038-1	철	38	20,000	76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2	예천읍 청북리	876-2	철	1,124	20,000	22,48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3	예천읍 청북리	1025-4	철	43	20,000	86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4	예천읍 청북리	761-7	철	3,683	20,000	73,66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5	예천읍 청북리	761-4	철	50	20,000	1,00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6	예천읍 청북리	877-20	임	96	20,000	1,92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7	예천읍 청북리	877-21	임	160	20,000	3,200,0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8	예천읍 청북리	877-14	전	42	16,100	676,2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19	예천읍 청북리	758-2	전	58	20,200	1,171,600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9필지 2건	19,240 10,004	384,647 28,3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9필지 2건	19,240 10,004	384,647 28,300,000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 고
	구 분	소재지	수량(면적)				
1	건물	포항시 북구 홍해읍 이인리 일원	• 건축연면적 8,800m ²	25,000,000	'19. 7.	• 청사 신축으로 해양관련행정 수요에 효율적 대응 및 균형 발전 도모 • 공개경쟁입찰	동해안 발전정책과 (신축)
2	건물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경북도립 대학교 내	• 건축연면적 1,204m ²	3,300,000	'18. 8.	• 도립대학 3년제 전환에 따른 강의실 확충 • 공개경쟁입찰	경북도립 대학교 (신축)
3	부지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남본리 일원	• 19필지 19,240m ²	384,647	'17. 7.	• 경북선 철도이설에 따른 폐선 부지 이관 • 기부채납	도로철도 공항과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7년 6월 20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주요 내용

○ 재산 취득

- 토 지 : 19필지, 19,240㎡ 384,647천원
- 건 물 : 2건, 10,004㎡ 28,300,000천원

○ 2017년도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 고
	구 분	소재지	수량(면적)				
1	건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	• 건축연면적 8,800㎡	25,000,000	'19.7.	• 청사 신축으로 해양관련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 및 균형발전 도모 • 공개경쟁입찰	동해안 발전정책과 (신축)
2	건물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경북도립 대학교 내	• 건축연면적 1,204㎡	3,300,000	'18.8.	• 도립대학 3년제 전환에 따른 강 의실 확충 • 공개경쟁입찰	경북도립 대학교 (신축)
3	부지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남분리 일원	• 19필지 19,240㎡	384,647	'17.7	• 경북선 철도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이관 • 기부채납	도로철도 공항과

○ 삭제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소요예산	사업규모	취득 시기	용 도	비 고
	구 분	소재지					
2	건물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경북도립대학교 내	3,300,000	• 건축연면적 1,204㎡ • 1개동	'18.8.	강의동, 교수 연구동 등	

二 규 칙 안 二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진복 의원 외 31명(2017. 5. 1)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6월 26일

경상북도 의회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②도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一問一答) 방식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2. 일문일답(一問一答)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의2(도정에 관한 질문) <개정 '05. 9. 22.> ① (생략) ② <u>도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을 마친 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한다.</u> <개정 '05. 9. 22.> (신설) ③ (생략) ④ (생략)	제73조의2(도정에 관한 질문) <개정 '05. 9. 22.> ① (현행과 같음) ② <u>도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一問一答) 방식으로 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도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u> 2. <u>일문일답(一問一答)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73조의2 ③과 같음) ⑤ (현행 제73조의2 ④와 같음)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93회 정례회)



2017. 7. 인쇄 / 2017. 7.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